#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의2(휴업 • 폐업 신고 등)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제1절 설계

제11조(설계)

## 제2절 시공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 제3절 감리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 제3절의2 방염

제20조의2(방염)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제4절 도급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제30조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 제6장 보칙

제31조(감독)

제32조(청문)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07

제1장 총칙 <개정 2010. 7. 23.>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 (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23.]

-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 공사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23.]

#### 제2장 소방시설업

-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7. 23.]

-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2015. 7. 20., 2018. 2. 9., 2021. 11. 30.>
  - 1. 피성년후견인
  - 2. 삭제 < 2015. 7. 20.>
  -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전문개정 2010. 7. 23.]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 제6조의2(휴업 폐업 신고 등)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 6. 9.>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0. 6. 9.]

-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4. 삭제 < 2020. 6. 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20. 6. 9.>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0., 2018. 2. 9.>
  -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2. 30.>
  -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19., 2014. 12. 30., 2015. 7. 20., 2016. 1. 27., 2017. 7. 26., 2018. 2. 9., 2020. 6. 9., 2021. 1. 5., 2021. 11. 3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5. 삭제 < 2013. 5. 22.>
-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 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 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인계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2020. 6. 9.>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 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10. 7. 23.]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개정 2014. 12. 30.>

제1절 설계 <개정 2010. 7. 23.>

-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 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 (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 <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제2절 시공 <개정 2010. 7. 23.>

- 제12조(시공)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 2.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6. 9.>[전문개정 2010. 7. 23.]
-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 ② 삭제 < 2015. 7. 20.>
  -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삭제 < 2015. 7. 20.>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5. 7. 20.]

## 제3절 감리 <개정 2010. 7. 23.>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1. 11. 30.>

-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 ③ 감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2021. 1. 5.>
  -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와 종전의 공사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관계 서류를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9.>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30., 2017. 7. 26.>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2. 30.,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3절의2 방염 <신설 2014. 12. 30.>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본조신설 2014. 12. 30.]

-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실적 등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방염처리업자는 전년도 방염처리 실적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제4절 도급 <개정 2010. 7. 23.>

-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1. 10. 19.>
  -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0. 19.>

[본조신설 2011. 8. 4.]

[제목개정 2021. 10. 19.]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 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 7. 26.>
  - ⑤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 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촉구한 기간 내 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 방법이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촉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신설 2020. 6. 9.>
  - ③ 삭제<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하거나 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 공사 등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공사명
  - 2. 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 사유)
  -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 5. 하도급 공사업종
  -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명세, 하도급률)
  -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 8. 기성금 지급 방법(지급 주기, 현금지급 비율)
  -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와 관련된 절차 및 방법, 공개대상 계약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7. 23.]

-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 1.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인 경우
  - 3.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 4.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전문개정 2014, 12, 30.]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 2017. 7.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12. 30., 2017. 7. 26., 2018. 2. 9.>

[전문개정 2010. 7. 23.]

-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 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 ② 시ㆍ도지사는「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 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6. 1. 27.]

-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기술인력 보유 현황, 소방시설공사등 수행상황, 행정처분 사항 등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 2. 소방시설공사등의 착공 및 완공에 관한 사항,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현황 등 소방시설공사등과 관련된 정보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9.]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4장 소방기술자

-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2021. 11. 30.>
  -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30.>
  -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을 수 없다.<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를 육성하고 소방기술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자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양성・인정 교육훈련(이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11. 3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2. 9., 2021. 11. 30.>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2, 9, 2021, 11, 30.>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2. 9.,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23.]

**제5장 소방시설업자협회 <**개정 2014. 12. 30.>

제30조 삭제 <2014. 12. 30.>

-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 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 2.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 3.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 활동 및 행사의 유치
- 4. 이 법에 따른 위탁 업무의 수행

[본조신설 2010. 7. 23.]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제6장 보칙 <개정 2010. 7. 23.>

- 제31조(감독)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제29조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이하 "실무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10. 7. 23.]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 소방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6.>
  -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6. 1. 27, 2017. 7. 26, 2018. 2. 9, 2020. 6. 9.>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4.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 5.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6.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④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4. 20.>
  -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 교육훈련 업무
  - ⑤ 삭제<2011. 8. 4.>

[전문개정 2010. 7. 23.]

-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2. 9., 2021. 4. 20.>
  -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 7. 23.]

-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6.>
  -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1. 8. 4.]

제7장 벌칙 <개정 2010. 7. 23.>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0., 2020. 6. 9.>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2. 9., 2020. 6. 9.>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불이익을 준 자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5.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0. 7. 23.]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5. 7. 20., 2016. 1. 27., 2018. 2. 9., 2020. 6. 9., 2021. 1. 5., 2021. 4. 20.>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7. 삭제 < 2015. 7. 20.>
-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0의2. 삭제 < 2018. 2. 9.>
-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2. 삭제 < 2011. 8. 4.>
- 13. 삭제 < 2013. 5. 22.>
-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3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8522호,2021. 11. 3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② 까지 생략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제3호·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제1항제9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0조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 제2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2제3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4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제49조"로 한다.

③ 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